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, 대규모점포 개설등록·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‘보고’하도록 하던 것을 ‘통보’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5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